「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」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**제출일자**: 2026년 10월 6일
2. **제 출 자**: 구미시장
3. **회부일자**: 2026년 10월 7일
4. **상정일자**: 2026년 10월 14일
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기획조정실장 김 은 영

2. 제안이유

○ 2027년도 구미시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
나. 출연 예정금액 : 46,050천원(시비 100%)

다. 출연필요성

「지방세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

라. 법적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4. 참고사항

가. 첨부서류

1) 출연 동의요구서(붙임)

2) 출연기관 현황(붙임)

3) 출연 사업계획서(붙임)

나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다. 예산조치 : 2027년도 예산편성(46,050천원)

라. 합　　의 : 예산재정과

1) 출연 동의요구서

주관부서	세정과

<table>
<tr><td>기 관 명</td><td>한국지방세연구원</td></tr>
<tr><td>출연대상</td><td>○ 일반현황
-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
- 주요사업
·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
·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</td></tr>
<tr><td>출연
사업비</td><td>○ <u>출연 예정금액 : 46,050천원(시비 46,050천원)</u>
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천원)
<table>
<tr><td rowspan="2">구 분</td><td rowspan="2">2026년도
출연금</td><td colspan="3">2027년도 예산안</td><td rowspan="2">전년대비
증감액</td></tr>
<tr><td>연구원
요구액</td><td>부 서
산정액</td><td>증 감</td></tr>
<tr><td>출연금
(시비
100%)</td><td>39,231</td><td>46,050</td><td>46,050</td><td>-</td><td>증6,819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출연
필요성</td><td>○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</td></tr>
<tr><td>근거·법령</td><td>○ 지방세기본법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· 운영)
○ 지방세기본법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· 운용)
○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</td></tr>
<tr><td>지도감독
부서의견
(총 평)</td><td>○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, 정기 간행물 발간,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,
○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,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,
○ 특히,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(총12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</td></tr>
<tr><td>첨부자료</td><td>1. 출연기관 현황
2. 출연사업계획서</td></tr>
</table>

2) 출연기관 현황

한국지방세연구원

<table>
<tr><td>설립근거</td><td colspan="3">법 률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</td><td>전화번호 : 02-2071-2748
홈페이지 :
www.kilf.re.kr</td></tr>
<tr><td>주요연혁</td><td colspan="2">- 2011.2 설립등기, 2011.4 개원,</td><td>기관형태
(출자, 출연)</td><td>- 출연</td></tr>
<tr><td>인원현황
(2026년
8월 기준)</td><td colspan="4">
<table>
<tr><td rowspan="2">구 분</td><td rowspan="2">계</td><td rowspan="2">원장</td><td colspan="4">연구관련직</td><td rowspan="2">사무직
시설직</td></tr>
<tr><td>연구위원직</td><td>연구원직</td><td>조사분석직</td><td>전문직 등</td></tr>
<tr><td>정 원</td><td>78</td><td>1</td><td>24</td><td>18</td><td>8</td><td>10</td><td>17</td></tr>
<tr><td>현 원</td><td>61</td><td>1</td><td>16</td><td>10</td><td>8</td><td>9</td><td>17</td></tr>
<tr><td>총인원</td><td>91</td><td colspan="5">정원외 인원 30명 (파견공무원 12, 위촉직 연구·전문·행정원 등 18)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임 원
(2026년
9월 기준)</td><td colspan="4">
<table>
<tr><td>직 책
(직책명)</td><td>성 명</td><td>주요경력
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</td><td>비 고</td></tr>
<tr><td>이 사 장</td><td>정 종 섭</td><td>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</td><td>2024.2.2. ~ 2027.2.1.</td></tr>
<tr><td>부이사장</td><td>성 낙 인</td><td>경상남도 창녕군수</td><td>2026.3.13. ~ 2027.3.12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신 승 근</td><td>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</td><td>당 연 직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이 현 정</td><td>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</td><td>당 연 직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임 재 근</td><td>서울특별시 재무국장</td><td>2026.9.9. ~ 2027.9.8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박 민 범</td><td>대전광역시 행정자치국장</td><td>2026.9.9. ~ 2027.9.8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박 중 근</td><td>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</td><td>2026.9.9. ~ 2027.9.8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양 제 윤</td><td>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</td><td>2026.9.9. ~ 2027.9.8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김 성 수</td><td>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</td><td>2026.3.13. ~ 2027.3.12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김 병 내</td><td>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</td><td>2026.3.13. ~ 2027.3.12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조 규 일</td><td>경상남도 진주시장</td><td>2026.3.13. ~ 2027.3.12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이 상 범</td><td>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
정책연구실장</td><td>2025.8.30. ~ 2027.8.29.</td></tr>
<tr><td>감 사</td><td>김 정 선</td><td>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</td><td>당 연 직</td></tr>
<tr><td>감 사</td><td>김 옥 흔</td><td>대구광역시 남구 부구청장</td><td>2026.3.5. ~ 2028.3.4.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주요기능</td><td colspan="4">-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</td></tr>
<tr><td>설립자본금
(단위:백만원)</td><td colspan="2">1
(직전연도말 기준)</td><td>출자・출연액
(단위:백만원)</td><td>150,296
('11~'26 까지 지자체가 출자・출연한 금액)</td></tr>
<tr><td>최근3년간
예산 현황
(단위:백만원)</td><td colspan="4">
<table>
<tr><td>연도</td><td>2024</td><td>2025</td><td>2026</td></tr>
<tr><td>예산액</td><td>17,813</td><td>17,467</td><td>17,247</td></tr>
<tr><td>지자체
지원액</td><td>13,079</td><td>12,415</td><td>10,470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재무현황
(백만원)
'25.12.31기준</td><td colspan="2">
<table>
<tr><td>자산</td><td>28,531</td></tr>
<tr><td>부채</td><td>1,583</td></tr>
<tr><td>자본</td><td>26,948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경영성과
(단위:백만원)
'25.12.31기준</td><td colspan="2">
<table>
<tr><td>총수익</td><td>총비용</td><td>당기순이익</td></tr>
<tr><td>17,600</td><td>16,554</td><td>1,379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3) 출연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	구분	출자	해당없음
주관부서	세 정 과		출연	46,050천원(시비)

1 목적 및 필요성

○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
○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

2 출연개요

○ 연구원 운영 예산('26년: 17,247백만원) 중 10,470백만원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
○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

3 산출기초

○ 출연액 : 46,050천원
○ 전전년도 보통세의 1.0/10,000를 출연
- 출연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 (단위 : 천원)

구 분	합 계	'22년	'23년	'24년	'25년	'26년
출연금	251,583	45,986	49,767	59,447	57,152	39,231

4 기대효과

○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○ 지방재정·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

5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○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, 지방재정·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
○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출연안은

- 지방세 연구·교육 및 세정 지원을 위한 법정 출연금을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한 법정 출연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, 세무공무원 교육과 쟁송 자문, 구미시 관련 연구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세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세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　　략

Ⅴ. 토　론　요　지: 없　　음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 없　　음

Ⅶ. 심　사　결　과: 원안가결